

NAS 현안분석 vol. 80 밀명

발간등록번호 31-9735042-001622-14 ISSN 2586-565X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박선권*

NARS 현안분석 vol. 80 ▮ 2019년 11월 18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 www.nars.go.kr

I. 서론 • 01

Ⅱ.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운영 현황 • 01

Ⅲ. 외국 정책 사례 • 06

IV. 현행 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방향 • 10

한국은 2013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양육수당, 2018년 아동수당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실상 처음으로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도입·시행해 왔다. 하지만 양육수당이 그 수급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 양육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시행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영유아보육법」개정(2015.5.18.)과「아동수당법」제정(2018.3.27.)을 통해 해외 체류 아동 지급정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도 및 지급정지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외국 정책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수급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환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 거주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한 해외체류 및 귀국의 신고 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급 정지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속' 기준을 '180일 이내 연속・불연속 90일 이상'으로 보완하여 편 법 수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환수규정의 세부 사항들에서 차이가 있어 제도들 간의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양육수당의 환수규정을 아동수당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 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1) 국제구호활동가, 국내기업 파견 해외근로자, 국가 파견 공무원, 여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대한 아 동수당 지급정지 예외 규정과 2)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동거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 규정의 마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서론

- 한국은 2013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 2018년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하였음
 - 이 두 제도는 전자가 서비스급여¹⁾이고 후자가 현금급여라는 차이는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사회 보험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시행된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하지만 양육수당이 그 수급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 양육수당 부정수급 문제 가 시행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특히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해년도 1~7월 출국 기록만 있고 입국 기록이 없는 아동 1만5천 969명에게 모두 55억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²〉,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이에 따라「영유아보육법」개정(2015.5.18.)과「아동수당법」제정(2018.3.27.)을 통해 해외체류 아동 지급정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음
 - 즉, 이와 같은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환수비율도 높지 않은 상태에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정지제도 및 지급정지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외국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Ⅲ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운영 현황

1. 지원대상 및 해외체류 지급정지 법적 근거

가. 양육수당

■ 지원대상

- 무상보육(0~2세 영유아보육료, 3~5세 유아학비) 혹은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3개월~36개월) 를 받지 않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항)
 - 서비스 중복 배제 요건

¹⁾ 양육수당은 현금형태로 지급되지만 시설보육서비스 지원인 보육료지원(0~2세 영유아보육료, 3~5세 유아학비)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정보육서비스 지원에 해당함

²⁾ 연합뉴스, "해외 체류 아동에도 양육수당 55억 지급"-최동익 의원 "보육재정 부족한데 해외 아동까지 챙겨야하나" -, 2013.10.2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3)

■ 해외체류 지급정지

-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체류시 지급을 정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함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3항)

■ 환수

-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환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 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영유 아보육법」제40조의2제1항)

나. 아동수당

■ 지원대상

- 7세 미만의 아동
 -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아동수당법」제4조제1항)
 - 이와 같은 지원대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계속 확대되어 왔음([표 1] 참조)
 - 법률 개정(2019.1.15.)으로 제정 당시의 지급대상4)에서 경제적 수준 기준을 삭제하고 6 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함

■ 해외체류 지급정지

-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체류시 지급을 정지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³⁾ 여성가족부,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19.1. p.28

⁴⁾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함(「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시행 2018.9.1.] [법률 제15539호, 2018.3.27., 제정])

표 1 아동수당 확대 연혁

구분	일자	아동수당 대상		
도입	2018.9.1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		
보편지급	2019.1.1	모든 계층 만 6세 미만 아동		
연령확대	2019.9.1	만 7세 미만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2019.7.19. p.1.

■ 해외체류 신고

- 해외체류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아동수당법」 제15조제1항)
 -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아동수당법」 제15조 제1항제1호)

■ 화수

- 해외체류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 화수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함 ((「아동수당법」제16조제1항)
 -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아동수 당법」제16조제1항제2호)

2. 해외체류 지급정지 제도 운영현황

가. 양육수당

■ 지급정지 현황

- 2016년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된 이래 연도별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월평균으로 보면, 2016년 2.895건,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2019년 6월까지는 4,230건 등이었음

■ 양육수당 해외체류 환수 현황

- o 2016년 지급정지 제도가 시행 된 이래 연도별 화수 결정건수, 결정액, 납부액은 2017년을 정점 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전체 환수 결정건수는 7,025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73억8천5백여 만원에 달했는데 환수 납부액은 25억9천6백여만원에 그쳐 환수비율은 35.1% 수준이었음

○ 화수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I표 2 | 연도별 양육수당 해외체류 지급정지 현황

(단위: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6월)	합계
지급정지 건수	34,734	37,079	37,478	25,379	134,670

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은 '15.9.19.부터 시행되어 90일 이상 해외체류에 대한 지급정지는 '16.1월부터 발생자료: 사회보장정보원통계센터·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9.10.10.

l표 3l 연도별 양육수당 해외체류 환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환수 결정건수	환수 결정액	환수 납부액	환수 비율
2016년	2,186	2,323,713	857,769	36.9%
2017년	2,729	3,246,168	1,131,896	34.9%
2018년	2,020	1,755,250	588,907	33.6%
2019년(~6월)	90	60,013	17,300	28.8%
합 계	7,025	7,385,144	2,595,872	35.1%

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은 '15.9.19.부터 시행되어 90일 이상 해외체류에 대한 지급정지는 '16.1월부터 발생자료: 사회보장정보원통계센터·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9.9.26.

나. 아동수당

■ 지급정지 현황

-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월평균으로 보면, 2018년 4개월간 2,261건, 2019년 7개월간 3,695건이었음

I표 4 연도별 아동수당 해외체류 지급정지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8년(9월~)	2019년(~7월)	합계
지급정지 건수	9,042	25,865	34,90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9.9.27.

■ 아동수당 해외체류 환수 현황

- 2018년(4개월간)에 비해 2019년(7개월간)에 환수 결정건수, 결정액, 납부액에서 증가세가 발 견되고 있음
 - 11개월의 기간 동안 환수 결정건수는 1,657건으로 환수결정액은 3억5천9백여만원이었는데 환수납부액은 2억4천3백여만원으로 환수비율은 67.6% 수준이었음

- 환수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5 연도별 아동수당 해외체류 환수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환수 결정건수	환수 결정액	환수 납부액	환수 비율
2018년(9월~)	245	28,849	17,350	60.1%
2019년(~7월)	1,412	330,407	225,500	68.2%
합 계	1,657	359,256	242,850	67.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9.9.27. 재구성

3. 요약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지원대상에 거주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의 연령 기준과 서비스 중복 배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수당 법」은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체류시 지급을 정지하고 있고, 아동수당은 해외 체류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환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환수 이유와 집행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갖고 있음
 - 아동수당은 '해외체류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 「아동수당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갖고 있음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모두 월평균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양육수당은 2016년 2,895건,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2019년 6월까지 4,230건 등이었음
 - o 아동수당은 2018년 4개월간 2.261건, 2019년에는 7개월간 3.695건 등이었음
- 양육수당 해외체류 환수는 2016년 이래 연도별 환수 결정건수, 결정액, 납부액에서 2017년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아동수당 해외체류 환수는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환수 결정건수, 결정액, 납부액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환수비율에 있어서는 양육수당이 ⅓ 수준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동수당은 ⅔ 수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Ⅲ 외국 정책 사례

■ 이 장에서는 한국의 해외체류 지급정지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스웨덴, 핀란드, 일본의 정책 사례를 살펴 봄

1. 스웨덴의 이동수당(Barnbidrag)5)

■ 수급자격

-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미만 아동
 - 일부 상황에서는,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스위스에 거주해도 수급가능
- 부모가 스웨덴 피보험자일 것. 스웨덴에 거주하고, 스웨덴 시민권이나 스웨덴 체류허가권 (residence permit)를 보유하고 있다면 피보험자임
 - 이러한 피보험자 규정에는 (아동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타국에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음. 가령, 타국에서 근로하지만 스웨덴 피보험자이거나, 스웨덴에서 근로하지만 타국의 피보험자인 경우도 있음
 - 선원으로 근로하는 경우, 외교관인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근로하는 경우, 승무원의 일원으로 근로하는 경우, EU내 계약직 피고용자(a contracted employee)인 경우, 스 웨덴 사회보험 적용 면제가 허용된 경우, 스웨덴 소속이지만 타국에서 근로하는 행정 공 무원인 경우, 스웨덴 고용자가 타국에서 근로하도록 하거나 타국 고용자가 스웨덴에서 근로하도록 한 경우
- 스웨덴으로 이주한 경우
 - 부모와 자녀가 체류허가를 받고 인구등록부(Population Register)에 등록되면, 사회보험 청(Försäkringskassan)이 아동수당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한 이후 지급

■ 해외체류 지급정지

- 아동이 스웨덴을 떠나는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 국제구호활동가(aid worker), 공무원(government employee), 유학생(student studying abroad)인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적용됨
- 아동이 16세 미만이고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청 (Försäkringskassan)에 신고해야 함
 - 6개월 미만인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6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⁵⁾ 스웨덴 사회보험청, 아동수당(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nar_barnet_ar_fott/barnbi drag/), 2019.10.25. 최종 검색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 신고를 통해 수급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상환이 강제됨

2. 핀란드의 아동수당(Lapsilisä)⁶⁾

■ 수급자격

- o 핀란드에 영주하는(permanently resident) 17세 미만 아동
 - 수급자격은 거주를 근거로 함

■ 해외체류 지급정지

- 아동이 법적 보호자와 해외 영주하는 경우 지급은 종료됨
 -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해외이주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됨
- 아동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지급은 정지됨
 - 6개월 미만 일시적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의 수급자격이 있음
- 해외이주시 사회보험청(Kela)에 신고해야 하고, 일시적인 해외체류와 귀국도 신고해야 함
- 국경을 넘는(cross-border) 국제적 상황에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⁷⁾
 - 핀란드에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17세미만 아동이 핀란드에 영주하면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가령 해외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lähetetyn työntekijän: posted worker)나 핀란드 공무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가족구성원이 EU/EEA/스위스로 이주하는 경우, 수급자격은 가족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됨. 해외 이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여전히 핀란드 사회보장권을 갖고 있다면 지급될 수 있음
 - 기본지불국(the primary payer)은 통상 보호자의 고용 국가이고, 보조지불국(the secondary payer)은 아동의 거주 국가임. 보호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근로하는 경우, 수급자격은 여러 국가들의 규칙에 따라 결정됨
 - 이주 이후 아동이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권을 갖고 있고 부모 중 한 명이 고용을 근거로 한 핀란드 사회보장권을 갖고 있다면, 핀란드는 여전히 아동수당 지급 책임국들 중 하나임
 - 아동이 EU/EEA/스위스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핀란드에 거주하지만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되지 않음

⁶⁾ 핀란드 사회보험청, 아동수당(https://www.kela.fi/web/en/child-benefit), 2019.10.25. 최종 검색

⁷⁾ 핀란드 사회보험청, 국제적 상황에서의 수급자격(https://www.kela.fi/web/en/family-benefits-in-international-situations), 2019.10.25. 최종 검색

- (보호자가) EU/EEA/스위스에서 6개월 이상 학업 중인 경우에도 여전히 핀란드 사회보장 권을 갖고 있다면 지급될 수 있음
- 아동이나 가족 구성원이 거주나 근로를 근거로 한 핀란드 사회보장권이 더 이상 없다면 수 급권은 종료됨
- 타국에서 핀란드로 이주하는 경우
 - 거주나 근로를 위해 아동과 함께 핀란드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 다음 달 초부터 수급자격 이 부여됨
 - 아동이 EU/EEA/스위스에 거주하더라도 핀란드에서 근로하는 사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될 수 있음
 - 근로허가를 부여받고 핀란드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게 된 EU/EEA/스위스 외 여타 국가 출신의 사람도 아동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음

3. 일본의 아동수당(児童手当)

■ 수급자격

-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15세 미만 아동(「児童手当法」제4조)8)
- 이 외국인
 - 수급자와 아동이 모두 주민표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해외체류 지급정지10)

- 아동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음
- 아동이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수급가능
 - 일본 국내 주소가 없어진 전일까지 계속해서 일본 국내 주소를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 단기 유학하고 일본에 귀국하여 다시 3년 이내에 유학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 아도 됨
 - 교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부모(미성년후견인)와 동거하지 않을 것
 - 일본 국내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⁸⁾ 일본 e-Gov, 児童手当法(施行日: 平成三十年一月一日)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6AC0000000073), 2019.10.15. 최종 검색

⁹⁾ 일본 館山市, 児童手当について(https://www.city.tateyama.chiba.jp/shafuku/page100003.html), 2019.10.15. 최종 검색

¹⁰⁾ 일본 内閣府, 児童手当Q&A: 子ども・子育て本部(https://www8.cao.go.jp/shoushi/jidouteate/ippan.html). 2019. 10.15. 최종 검색

4. 요약

- 조사 국가들은 수급자격 요건에서 모두 아동의 국내 거주를 규정하고 있음
- o 스웨덴은 아동의 거주와 부모의 스웨덴 피보험자 요건이 있음
- 핀란드는 아동의 영주와 부모의 사회보장권 요건이 있음
- 일본은 아동의 국내 주소 보유 요건이 있음
- 조사 국가들은 모두 해외체류 지급정지 규정을 갖고 있음
 - 스웨덴은 아동이 스웨덴을 떠나는 경우 정지됨
 - 핀란드는 아동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정지됨
 - 일본은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정지됨
- 스웨덴과 핀란드는 해외체류 신고 규정을 갖고 있음
 - 스웨덴은 아동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신고해야 함
 - 스웨덴은 신고를 통해 수급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상환이 강제된다는 환수 규정이 있음
 - 핀란드는 해외이주시, 일시적인 해외체류와 귀국시에도 신고해야 함
- 조사 국가들은 아동이 해외체류하는 경우에도 수급가능 예외가 있음
 - 스웨덴은 국제구호활동가, 공무원, 유학생인 법적 보호자와 해외로 이주하는 아동에 대한 특별 규칙이 있음
 - 핀란드는 해외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나 핀란드 공무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 그리고 EU/EEA/스위스로 이주시 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거주나 근로를 근거로 한 핀란드 사회보장권이 있는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일본은 아동 유학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조사 국가들은 외국인 아동 수급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음
- 스웨덴은 부모와 자녀가 체류허가를 받고 인구등록부에 등록되면 사회보험청이 수급자격 여부 를 조사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핀란드는 핀란드에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지급할 수 있음
- 일본은 수급자와 아동이 모두 주민표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의 미비점 및 개선방향

이상의 한국과 외국의 해외체류 아동 지급정지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지원대상의 거주 요건 명시

■ 주요 국가들이 수급자격에서 아동의 거주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아동의 거주 요건이 없음

■ 개선방향

-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에 국내 거주 요건을 명시함
 - 국내 거주 요건의 명시는 수급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환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시: (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u>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영유아보육법」제34조제1항 개정)
 - 예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국내에 거주하는 7세 미만의 아</u> 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개정)

2. 양육수당 수급자의 해외체류 및 귀국 신고 강행규정 명시

■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아동수당이 해외체류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양육 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음

■ 개선방향

- 양육수당 수급자에 대한 해외체류 및 귀국의 신고 의무를 신설함
 - 예시: (양육수당) 제3항의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및 귀국하** 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신설)

3. 해외체류 '90일 이상 지속' 기준의 타당성 논의 및 보완

■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급정지 기준이 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90일 이상으로 하고 있음

■ 개선방향

○ 글로벌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90일 이상' 기준의 타당성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검토

- 다만 현행 기준이 「주민등록법」상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기준이나 「재외국민등록법」상 등록대상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행정적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왔음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부수적으로 '90일 이상' 기준을 보완하여 편법 수급 방지
 - 예시: '90일 이상'을 '180일 이내 연속·불연속 90일 이상'11)으로 수정

4.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환수규정의 일관성 제고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모두 환수규정을 갖고 있으나 세부 사항들에서는 차이가 있어 제도들 간의 일관성이 미흡함
 - 양육수당이 환수이유를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동수당은 '해외체류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양육수당 환수이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로 배제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모두에 적용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체류 지급정지 이유'를 포괄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환수시행에 대해 양육수당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동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 개선방향

- 양육수당의 환수규정을 아동수당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 양육수당의 환수이유에 '해외체류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를 별도로 신설하고, 환수 시행도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5. 아동수당 해외체류 지급정지 예외 규정 마련 검토12)

■ 스웨덴, 핀란드, 일본이 모두 아동이 해외체류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예외 규정이 없음

■ 개선방향

○ 국제구호활동가, 국내기업 파견 해외근로자, 국가 파견 공무원, 여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정지 예외 규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¹¹⁾ 수급자격 관련 체류 요건이 '연속 혹은 불연속으로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 프랑스 가족수당의 상거소(résidence habituelle) 개념을 참조함. 프랑스, Allocations familiales(https://www.service-public.fr/), 2019.10.15. 최종 검색

¹²⁾ 양육수당은 현금형태로 지급되지만 국내에서 시설보육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수급하는 가정보육서비스 지원으로서, 예외 규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동거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 규정 마련 검토

■ 핀란드, 프랑스, 일본이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규정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한국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개선방향

○ 「출입국관리법」제18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한국에서 취업하여 근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2019.7.19.
- 사회보장정보원통계센터·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해외체류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환수 관련'
- 스웨덴 사회보험청, 아동수당(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nar_ barnet_ar_fott/barnbi drag/), 2019.10.25. 최종 검색
- 여성가족부,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19.1.
- 연합뉴스, "해외 체류 아동에도 양육수당 55억 지급"-최동익 의원 "보육재정 부족한데 해외 아동까지 챙겨야하나" -, 2013.10.23.
- 일본 館山市, 児童手当について(https://www.city.tateyama.chiba.jp/shafuku/page100003. html), 2019.10.15. 최종 검색
- 일본 内閣府, 児童手当Q&A: 子ども・子育て本部(https://www8.cao.go.jp/shoushi/jidouteate/ ippan.html). 2019.10.15. 최종 검색
- 일본 e-Gov, 児童手当法(施行日: 平成三十年一月一日)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 Search/elaws search/lsg0500/detail?lawId=346AC0000000073), 2019.10.15. 최종 검색
- 프랑스, Allocations familiales(https://www.service-public.fr/), 2019.10.15. 최종 검색
- 핀란드 사회보험청, 국제적 상황에서의 수급자격(https://www.kela.fi/web/en/family-benefits -in-international-situations), 2019.10.25. 최종 검색
- 핀란드 사회보험청, 아동수당(https://www.kela.fi/web/en/child-benefit), 2019.10.25. 최종 검색



NARS 현안분석 vol. 80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

